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836 발의연월일: 2025. 6. 13.

발 의 자:김용태・이종배・임종득

강대식 · 서천호 · 이달희

김재섭・김 건・박준태

박덕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를 통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및 인구·소득 증대를 촉진할 수 있는 행정 적·재정적 지원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.

그런데 산불·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난 및 사고 발생으로 특별재 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를 비롯하여 기반시설 확 충,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또한,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절 차를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.

이에 일정 기간 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관할 행정 구역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해 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, 인구감소지 역 또는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를 다른 시·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제3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 본문 중 "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·도지사는"을 "시·도지사는"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수도권"을 "수도권의 경우 수도권"으로, "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·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"를 "접경지역에 한정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중 "제5항까지에서"를 "제6항까지에서"로 한다.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	제23조(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
지원) ① <u>수도권이 아닌 지역</u>	지원) ① <u>시·도지사는</u>
<u>의 시·도지사는</u> 관할 행정구	
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	
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	
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	
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	<u>수도권의 경우 수도권</u>
<u>수도권</u>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	
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	
조제1호에 따른 <u>접경지역으로</u>	접경지역에 한정한다.
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	
지역의 시・도지사는 기회발전	
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
	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
	정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
	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
	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	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
	로 선포된 지역을 우선적으로
	고려할 수 있다.
<u>③</u> ~ <u>⑤</u> (생 략)	$\underline{4} \sim \underline{6}$ (현행 제3항부터 제5

⑥ 제1항부터 <u>제5항까지에서</u>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회발전투 구의 지정 신청, 지정, 지정 변 경·해제의 절차·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
항까지와 같음)
◎제6항까지에서
<u>.</u>